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010호

제출년월일 2022. 8. 18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2년 08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사용료 감면조항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 종목 사용료를 신설하고 경기도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인 사용료 반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김포FC 프로경기 관람권 수입 사용료 징수 면제(안 제10조)
- 김포FC 및 김포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·경기 사용료 감면 항목 신설(안 제11조)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(안 제11조)
-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준용 신설(안 제12조)
- 김포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[별표 2] 단체 및 노인ㆍ어린이 요금 삭제

4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분쟁 사례를 감소시킬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